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8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문금주 · 서삼석 · 이원택
윤준병 · 임미애 · 송옥주
이병진 · 박 정 · 문대림
이재관 · 김태년 · 김 윤
김문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및 제1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u>2025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